422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352호)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73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Ⅲ. 검토의견 ····· 12

1. 총괄 검토 ····· 12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입법 필요성 ····· 12

나. 제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 19

2. 주요 조문별 검토 ····· 22

가. 법률의 제명 및 목적 ····· 22

나. 용어의 정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3

다.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 28

라. 주얼리업의 등록 등 ····· 35

마. 주얼리 산업의 진흥 및 지원 ····· 44

바. 보칙 ····· 59

사. 벌칙 ····· 62

아. 부칙 ····· 66

※ 참고자료: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해외 사례 ····· 67

Ⅰ. 제안경위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오세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7.
3. 회　부　일 : 2024. 11. 8.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유럽·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주얼리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주얼리산업의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높은 세금은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를 유발시켰고 이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게 되었으며,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소비자 외면이 가속화 되면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때문에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

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얼리분야 제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마. 주얼리제조업 및 주얼리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대체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할 수 있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며, 주얼리 수출 촉진을 위하여 브랜드 개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투

자알선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의 등록,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하.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등록 사업자, 타업종 및 유사 업종의 주얼리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안 제33조).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주얼리산업은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인데다 브랜드·디자인, 패션, 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되어 발전해 온 결과, 유럽·중국 등에서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주얼리산업은 이러한 순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들에게 연간 1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어주는 등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력을 잃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업계추산 약 30조원 이상인 국내 주얼리시장이 과거 규제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최소 50% 이상의 무등록, 무자료 불법 거래되고 있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모조 불량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많은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주얼리 시장이 심하게 왜곡되었음.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고질적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주얼리산업을 선진 유럽처럼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국내 주얼리를 다양한 한류 상품과 연계해 K-JEWELRY로 브랜드화 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주얼리산업을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국내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얼리산업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주얼리산업 모법이 제정되지 않아 귀금속상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고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주얼리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6조).

마.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 결격사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얼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

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의 품질검증을 하며 주얼리 제조·창작에 필요한 기술개발,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대체 소재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주얼리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흥단지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정부는 주얼리 산업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제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 기업 명가를 선정·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파.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한 자 등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등록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를 두도록 함(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입법 필요성

주얼리는 일반적으로 보석 및 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만드는 장식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보석과 귀금속은 재화 자체가 가진 희소성·불변성·가치축적성·환금성으로 인하여 다른 소비재와 달리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되어 일부 부유층의 소비품목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으나,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구매 욕구 등이 상승하고, 결혼 문화에서의 예물로 활용되거나 일상생활에서 패션용품으로 사용되는 등 수요 양상이 확대되고 있음.

산업적 측면에서는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은 원재료의 가공 및 세공 기술에 따라 제품의 가치가 가변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데, 수요층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고급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하여 고도의 가공 기술 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등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해당함.

세계 주얼리 시장규모는 코로나 이후 세계 명품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2024년 3,960억 달러 규모로 예측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

5% 성장하고 있고, 세계 주얼리 교역액은 2022년 1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3.9% 성장하는 교역신장세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해당함. 세계 주얼리 시장은 중국, 미국, 인도를 중심으로 70% 이상이 형성되어 있고, 고급 주얼리 시장에서는 중국(홍콩), 프랑스 업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1].

우리나라의 주얼리산업 내수규모는 「2023 생활소비재산업실태조사」[2]에 의하면 2021년도 기준 4조 1,650억원 규모이며, 민간에서는 더 크게 추산하고 있음[3][4]. 무역규모로는 2023년 기준으로 수출 4.3억 달러, 수입 11.1억 달러로 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3% 가량으로 세계 25위 수출국에 해당함. 수출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점차 상승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만, 태국 등 동아시아로 다변화되는 반면, 수입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은 대량화·기계화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상 소규모 수공업 형태의 영세업체 위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 브랜드 및 마케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금

1) 한국무역협회(KITA), 「국내 주얼리 수출산업 현황 및 시사점」(2024. 4. 23.) 중 일부 요약
2)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연구원, 「2023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2023. 12.)
3) 민간 주얼리 산업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 의하면 국내 주얼리시장 전체 규모는 7조 7,315억원으로 추정됨. 출처 :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jewel.or.kr)
4) 주얼리업계(사단법인 귀금속판매업중앙회)는 국내 소비시장 연 7.7조원, 수출입 시장 100억 달러, 금 매입 18조원 등 전체 시장 규모는 연 30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속 제조업체와 도·소매 판매에 있어서도 세금 회피 등을 이유로 한 현물·무자료 거래 등이 성행하면서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유통구조의 낙후는 기존 「고물영업법」에 의해 귀금속상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1993년 동 법이 폐지되면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되고 이후 허술한 유통관리에 의해 음성시장화 됨에 기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5],

정부는 조세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의 양성화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에 따른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개별소비세법」 개정('18.12)에 따른 나석의 개별소비세 면제, 「관세법」 개정('19.12)에 따른 25종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실시하였으나[6],

그럼에도 여전히 보석 및 귀금속의 음성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불량·합성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을 양성화할 필

5) 국회의원 김원이·오세희·김동아 의원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정책자료 (2024. 8. 21.), p. 65
링크(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6035

6) 이에 따라 현재는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귀금속제품 등에 대해서는 기준가격(5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함.(「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얼리 시장의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제조·유통·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화를 전제로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며[7],

현재 보석 및 귀금속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발전법」,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각종 산업에 관련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률은 다양한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 분야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특화하여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보석 및 귀금속 산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8])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대상

7)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귀금속·보석산업 발전 방안」('07.7)을 수립하여 산업 인프라 구축, 우수 공예품의 개발·마케팅 지원, 국내 제조 귀금속 제품의 품질표시, 금유통관리기구 설립 등의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비금융사업자(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귀금속상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국제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국가 평판의 하락 위험이 있으므로 동법 제정을 통해 주얼리 및 원자재의 거래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안은 주얼리산업[9]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품질검증·기술개발, 우수 주얼리 지정 등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얼리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리나라의 주얼리 수출액은 2020년 2억 4백만 달러 규모에서 2023년 4억 3,000만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직업기술 최고 대회인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을 할 만큼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세계 고부가 주얼리시장이 최근 연 평균 4.5%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K-문화의 확산으로 홍보기회가 확대하는 등 향후 발전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는 반면,

8)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 간 협력체제 지원을 위해 1989년 OECD 산하기구로 설립된 국제기구임.
9) 제정안에서는 '주얼리를 제조(가공 포함)하거나,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를 판매·수입·수출·전시·소비 또는 그 밖에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내 수출산업에서 주얼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기업이 22개 내외로서 세계적으로 낮은 인지도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품질인증 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공감하나, ① 주얼리산업의 내수시장 규모는 전체의 0.3% 수준인 4.2조원('21년 통계)[10]으로 주얼리산업만을 위한 단독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영세하고, ② 산업발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령을 통한 주얼리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③ 주얼리업 등록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등록요건·대상 범위·절차 등 주요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등록제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주얼리업계[11] 22개 협회 및 재단은 내수·수입수출 등을 합하여 30조원 규모의 시장을 양성화 및 활성화함으로써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신뢰회복을 통하여 우리나라 주얼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이 필

10)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연구원, 「2023 생활소비재산업 실태조사」(2023. 12.)
11)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서울귀금속제조업협동조합,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사)한국보석협회, 한국주얼리평가협회, 종로귀금속생활안전협의회, 한국귀금속장맥회, (사)한국보석감정사협회,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코리아다이아몬드연마기술협회, (사)한국다이아몬드협회, 서울중부보석연마기술사업협동조합, (사)한국금협회, 한국시계협회,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 한국보석마케팅최고경영자협회,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이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므로, 법률안의 심사 과정에서 주얼리 산업에 대한 지원 및 등록제 도입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제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2건의 제정안(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은 우리나라의 주얼리를 브랜드화하여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 제조업 및 유통업의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기업 및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수출 증대,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안임.

오세희의원안과 김동아의원안은 각각 5 또는 6개 장, 본문 34 또는 35개의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제정안의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음.

두 제정안은 총칙, 주얼리산업진흥 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주얼리업의 등록제 도입, 주얼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조 지원, 유통활성화 및 투자 촉진, 우수주얼리 지정, 주얼리기업 명가 선정, 전담기관의 지정, 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진흥 및 지원 근거, 보칙·벌칙 등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 1] 제정안의 구성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제2장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제7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주얼리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등록의 취소 등)	**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제7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 제10조(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12조(등록의 취소 등)
제4장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제13조(실태조사) 제14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5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창업 및 제조 지원) 제17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제18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제19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0조(유통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21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22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제23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취소) 제24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25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2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29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제4장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제13조(실태조사) 제14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5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창업 및 제조 지원) 제17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제18조(주얼리 지식재산권 보호) 제19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 등) 제20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21조(유통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제2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23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제24조(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제25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26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제2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제5장 보칙 등 제30조(보고와 조사 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제5장 보칙** 제30조(보고와 조사 등)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가장 주된 내용은 현행 자유업에 해당하는 주얼리 관련 업종에서 제조, 유통 등 전 분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양한 진흥·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두 제정안의 차이점은 오세희의원안의 경우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규정한 반면, 김동아의원안은 주얼리산업 지식재산권 보호와 주얼리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조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법률의 제명 및 목적(안 제명 및 제1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제명은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 하며, 법률의 주요 규정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여야 함. 두 제정안은 제명을 각각 “주얼리산업진흥법안”과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여 제정안의 내용을 비교적 간결하게 담고 있음.

두 제정안은 “주얼리산업”을 제명에 반영하고 있는데, “주얼리”는 보석과 귀금속을 활용하여 제작한 장신구라는 의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 “Jewelry”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현한 것임.

일반적으로 법문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는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

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말 용어와 1:1로 바꾸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봄.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는 두 제정안이 동일하게 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진흥, 주얼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 등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용어의 정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2~4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보석 또는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 머리띠 등과 같은 각종 장신구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란 보석 또는 귀금속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반지·브로치·목걸이·귀걸이·팔찌·머리띠 등과 같은 각종 장신구를 말한다.
2. “주얼리원자재”란 주얼리의 제조 또는 그 자체로 유통되는 원자재로서 모든 천연 보석과 합성 보석을 포함하는 원석, 보석 나석류, 금 및 귀금속류 등을 말한다.	4. “주얼리원자재”란 주얼리의 제조 또는 그 자체로 유통되는 원자재로서 모든 천연보석과 합성 보석을 포함하는 원석, 보석 나석류, 금·은 및 귀금속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원석”이란 광산에서 채광한 보석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보석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마하기 전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의 광물을 말한다.	2. “원석”이란 광산에서 채광한 보석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보석 **등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연마하지 아니한 상태의 것을 말한다.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4. “보석 나석”이란 원석을 연마하여 그 가치를 높인 다이아몬드 또는 유색 종류의 보석으로서 주얼리 완제품에 물려지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낱개의 보석을 말한다.	3. “보석 나석”이란 원석을 연마하여 그 가치를 높인 다이아몬드 또는 유색 종류의 보석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를 제조·가공하는 등 주얼리 제조분야 와 주얼리 및 원석·보석 나석·주얼리원자재를 판매·수입·수출·유통하는 주얼리 유통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5. “주얼리산업”이란 주얼리를 제조·가공하는 등 주얼리 제조분야 와 주얼리 및 원석·보석 나석·주얼리원자재를 판매·수입·수출·유통하는 주얼리 유통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말한다.
6. “주얼리업”이란 **제5호의 주얼리 제조분야 또는 주얼리 유통분야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얼리업”이란 **주얼리산업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주얼리업자”란 **제5호의 주얼리 산업의 각 분야에서 그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주얼리제조 또는 주얼리유통 분야에서 각각 고유분야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주얼리업자”란 **주얼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용 창출, 중소기업 육성,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주얼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주얼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 제2조는 “주얼리”, “주얼리원자재”, “원석”, “보석 나석”, “주얼리산업”, “주얼리업”, “주얼리업자” 등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고 있음.

“원석”, “보석 나석”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서 지칭하는 바가 명확하고, 동 법에서 “주얼리원자재” 또는 “주얼리산업”을 정의할 때만 활용이 되며, 내용상 “주얼리원자재”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별도로 정의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용어 정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주얼리원자재”는 주얼리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또는 그 자체로 유통되는 원자재로서 천연 보석과 합성 보석을 포함하는 원석, 보석 나석류, 금 및 귀금속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오세희의원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여부의 구분을 명확화하기 위한 별도의 하위규정이 없는 반면, 김동아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주얼리를 제조함에 있어 천연보석, 귀금속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때에 따라 플라스틱, 비철금속, 나무, 접착제 등 일반적인 소재를 주얼리 제작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얼리원자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등을 통해 정의·구분하는 것이 용어의 명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주얼리산업”을 “주얼리 제조분야”와 “주얼리 유통분야”로 구분하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법문에 적합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주얼리산업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 제조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해외 홍

보 및 발전과 진흥 방안 마련, 고용창출·중소기업 육성·거래 투명성 제고 및 해외 경쟁력 확보 등의 촉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를 위한 OECD 산하 국제기구로서, 국내 관련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국제기구”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법문에 인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내용이 “진흥법”에 들어가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카지노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의무 등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주요 의무는 모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얼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및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체계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안 제5·6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2장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2장 주얼리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의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수출 촉진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의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수출 촉진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면세제도 운영 및 주얼리 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면세제도 운영 및 주얼리 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국제주얼리전시회 개최지원 및 국제주얼리센터 건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주얼리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11. 그 밖에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6조에 따른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①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 ①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장(제5·6조)은 주얼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과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료제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설정하였는데, 주얼리산업은 보석과 귀금속을 활용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유통, 수출·입, 판매 등을 하는 산업 분야에 해당하

므로, 상업·무역·공업·통상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12].

한편,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중 오세희의원안의 경우 "국제주얼리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김동아의원안의 경우 제10호에서 "주얼리의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제전시회 개최", "국제주얼리센터 건립지원"은 수출 촉진 또는 국제 교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면세제도 운영 및 전문 면세점 허가는 관세청,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관의 업무 관계 등을 감안하여 동 사항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정부조직법」 제37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하 생략)

안 제6조(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관련 정책에 관한 평가 및 자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원회는 3년 임기(연임 가능)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석·귀금속 및 주얼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함.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5조제4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얼리산업진흥정책의 수립·시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안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외에도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7조의2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

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존속기한 명시 여부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4조[13]에 의거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중복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14]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위원회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 내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회[15]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13)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최고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며, 그 소속하에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한다. (이하 생략)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경제 분과위원회
2. 성장동력 분과위원회
3. 무역투자 분과위원회 (후략)

라. 주얼리업의 등록 등 (안 제7~12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제3장 주얼리업의 등록 등
제7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① **제2조제6호의 주얼리 제조 또는 주얼리유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얼리업 분야별로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① **주얼리업을 하려는 자**는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 향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2년마다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 향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주얼리제조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관련 제조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주얼리유통업을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주얼리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주얼리소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귀금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오세희·김동아의원안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제9조(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얼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1.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주얼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주얼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오세희·김동아의원안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자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에 따라 주얼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주얼리업자에 대한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주얼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8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7~12조는 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등록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두 제정안 제7조(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 제1항은 공통적으로 주얼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얼리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오세희의원안의 경우에는 주얼리제조 또는 주얼리유통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주얼리업 분야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동아의원안은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

또한, 각 제정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얼리업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매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동아의원안은 등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반면 오세희의원안의 경우 주얼리제조업, 주얼리유통업, 주얼리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제조행위·유통업 관련 업무,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재 주얼리와 관련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판매자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거래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세·자금세탁·모조품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통관리 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주얼리의 제조 및 유통을 포함한 주얼리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얼리 및 주얼리 원자재의 제조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얼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주얼리 등을 제조·유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조사·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경우, 매출·영업현황 등 과세 및 영업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하고 가품·불량품 유통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제조·유통 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반면, 주얼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품·불량 제품의 유통 및 탈세 등의 문제가 주얼리 유통업의 등록제 도입만으로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동 업종에 대한 진입장벽 또는 기존 사업자의 퇴출이 유발되지 않을지 등 정책 도입의 효과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등록제 도입 시에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재료의 제조·유통과 연관된 분야 중 어느 범위를 등록제의 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등록요건 등)에 따른 대부업자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등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16]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수, 보유차고 면적, 영업소'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17]에 따른 양봉농가는 등록의 기준과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등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의 위임 방식에 차이가 있음.

한편, 참고로 우리나라는 과거 1961년부터 1993년까지 귀금속·보석의 유통관리를 위해 「고물영업법」을 통해 귀금속업자를 허가제로 관리하였으며, 고물영업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동법이 폐지되면서 이와 함께 동 제도도

---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폐지된 바 있음.

또한, 해외의 경우 주얼리사업의 등록·인증제도 운영방식이 국가마다 상이한바,

싱가폴에서는 귀금속 도소매, 중고품 거래 등의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적용하고, 미국에서는 주얼리 사업을 하기 위한 특정한 등록제도는 운영하지 않으나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주얼리 판매허가증 등을 받아야 함.

또한 홍콩에서는 주얼리협회가 주도하여 자체적인 평판 상호 인증(Reputation Shop Mark) 제도를 운영하며, 일본·프랑스 등에서는 별도의 주얼리업 등록 제도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18].

한편,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두 제정안이 등록의 결격사유, 지위승계,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등록의 취소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 중 등록취소의 사유에 주얼리업 등록 후에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18) 【참고자료.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해외 사례(산업연구원)】 참조

받아 우수주얼리 또는 주얼리기업 명가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위반 시 등록취소 사유 반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관련하여, 동 법안은 사업소만을 의무 등록하게 규정되어 있고 등록요건·범위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전부 위임하고 있어 등록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등록제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얼리 시장에서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등록 요건을 규정할 경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 등으로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시장 진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주얼리업계 22개 협회 및 재단은 귀금속상 허가제를 규정했던 「고물영업법」 폐지 이후 귀금속상의 관리가 약화됨에 따라 무자료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조직 등이 조직적인 사기 및 탈세 사건을 일으키는 등[19]의 사건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혼탁해지

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귀금속 제조에 있어서도 유해금속첨가, 저작권 침해 및 상표 도용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주얼리 분야 제조업과 유통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19)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1년, 2006년에 이른바 “금괴 폭탄업체 탈세사건”으로 범죄조직 등이 수출업체 등을 설립하여 금을 거래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변칙 거래를 통해 2조원이 넘는 조직적 사기 또는 탈세를 저지른 사건임.

마. 주얼리 산업의 진흥 및 지원(제4장)

1) 실태조사·통계작성·전문인력양성 등 (안 제13~17조)

오세희·김동아의원안
제4장 주얼리산업의 진흥 및 지원 제13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얼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주얼리산업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주얼리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사업

오세희·김동아의원안
2. 신규 주얼리산업 관련 인력의 유입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 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주얼리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외 연수생 훈련을 위한 입국비자 및 취업 비자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조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창작에 필요한 주얼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주얼리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김동아의원안
제18조(주얼리 지식재산권 보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주얼리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두 제정안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주얼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조 지원,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김동아 의원안 제18조는 주얼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및 협조요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주얼리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실태조사 및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 연도별로 실시하는 「생활소비재산업실태조사」에 포함된 15종의 생활소비재 중 하나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주얼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조 지원,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산업발전법」 등을 통해서도 추진이 가능[20]하나, 주얼리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호시책 마련 의무 및 제도개선 및 운영합리화를 위한 협조 요청권 역시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20)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내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익산 지역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04년부터 '18년까지 지원(총사업비 386억원)한 바 있음.

있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및 진흥을 위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사업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존 「산업발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을 통해서도 주얼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 및 타업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주얼리산업 기반시설 확충·진흥단지 조성 (오세희의원안 제18·19조, 김동아의원안 제19·20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18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주얼리산업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주얼리산업 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주얼리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단지에 자금, 설비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진흥단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세희의원안 제18·19조는 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김동아의원안 제19·20조는 주얼리산업 진흥단지 지정·조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오세희의원안의 경우 기반확충 또는 산업 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형식으로 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김동아의원안은 “진흥단지”의 지정 또는 조성,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법에서 별도의 “주얼리산업 진흥단지”라는 체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 및 구체적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에 따른 주얼리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조성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오세희의원안 제19조 또는 김동아의원안 제20조에서 규정된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에는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유통활성화 및 투자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오세희의원안 제20～29조, 김동아의원안 제21～30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20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주얼리 관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정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정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얼리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주얼리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 국가 간 주얼리산업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주얼리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주얼리산업 관련 투자유치**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6. 그 밖에 주얼리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 사업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 사업을 허가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우수 주얼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주얼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주얼리로 지정되었음을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우수 주얼리의 지정 기준·절차·표시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 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우수 주얼리의 지정 기준·절차·표시 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 주얼리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 주얼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 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 수준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주얼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얼리 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주얼리”는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제22조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제25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주얼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및 고용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주얼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의 구체적인 요건, 선정 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우수 주얼리”는 “주얼리기업 명가”로, “지정”은 “선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의 요건”으로 본다. 제26조(유사 명칭 사용금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얼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창작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각종 국제 표준화 사업 6.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얼리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제조·창작에 관한 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4. 국제 주얼리 전시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5. 주얼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각종 국제 표준화 사업 6.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정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	제28조(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① 정부는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 및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 등 주얼리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 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업이 현대적 디자인, 전통 문양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융합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의 생활화·산업화 및 세계화 등을 통하여 주얼리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그 관련 단체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두 제정안은 공통적으로 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오세희의원안 제20조, 김동아의원안 제21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오세희의원안 제21조, 김동아의원안 제22조), 우수 주얼리의 지정 및 취

소, 주얼리 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등(오세희의원안 제22~25조, 김동아의원안 제23~2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오세희의원안 제26조, 김동아의원안 제27조), 주얼리산업의 융합 및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오세희의원안 제27~29조, 김동아의원안 제28~30조)을 규정하고 있음.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오세희의원안은 사업근거를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 김동아의원안 제22조제1항은 각 호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원자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 사업을 허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법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세판매장 사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도 「관세법」에 따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 조항을 반영하더라도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효성은 없으며, 단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관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고 비과세·감면을 통합 관리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해서도 관세법 관련 사항을 관세법이 아닌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고, 원칙적으로 판매 품목 종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현행 법령상으로도 주얼리 전문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가 가능하나, 국제전시회 등에서 판매하는 주얼리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문제 및 전시장에서 판매된 주얼리의 국내 재판매 등 시장질서 저해 우려 등으로 인하여 안 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우수주얼리의 지정 및 지정취소(오세희의원안 제22·23조, 김동아의원안 제23·24조)와 관련해서는 제3항에서 우수주얼리에 대한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는 '우수주얼리를 지정할 수 있다'고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3항을 재량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주얼리 지정 제도에 관하여 미지정 제품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정 지정 제도 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제정안은 주얼리기술의 전수 및 발전을 위하여 주얼리기업 명가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오세희의원안 제24조, 김동아의원안 제25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지원 제도[21]를 통해 주얼리 업계의 우수인력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22], 유사 제도 신설 시 업계 혼란 및 중복 수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

21)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2) '23년 1월 기준으로, 보석 및 금속공예 분야에서 대한민국 명장 4명 및 우수 숙련기술자 9명이 선정·지원받은 바 있음.

바. 보칙(오세희의원안 제30조～32조, 김동아의원안 제31～33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5장 보칙 등	제5장 보칙
제30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보고와 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업자에게**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주얼리업자는** 30일 이내에 주얼리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등록 2. 제9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지위 승계에 대한 신고 3. 제11조에 따른 주얼리업자의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4. 제12조에 따른 주얼리업의 등록 취소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 보칙은 보고와 조사,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오세희의원안은 제5장에서 보칙과 벌칙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동아의원안은 제5장에서는 보칙을, 제6장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보고와 조사와 관련하여, 오세희의원안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제2항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동아의원안은 ‘주얼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위임·위탁과 관련하여, 오세희의원안 제31조제3항은 주얼리업자의 등록,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 대한 업무 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등록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개 주관부처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위임하고, 국세청은 세금 징수를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과태료 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벌칙(오세희의원안 제33～34조, 김동아의원안 제34～35조)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이수 및 주얼리업자 등록 갱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주얼리업 등록 갱신과 정기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오세희의원안	김동아의원안
3. 제22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5. 제25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3조에 따른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5. 제26조를 위반하여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 벌칙은 벌칙과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제정안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음.

[표 2] 벌칙 또는 과태료

벌칙 또는 과태료	위반사항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얼리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주얼리업 등록 갱신과 정기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은 자 우수 주얼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 주얼리의 표시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 받은 자 주얼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두 제정안은 주얼리업 등록 갱신과 정기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나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 외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주얼리업 등록을 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업무 순서에 따라 先교육-後등록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등 불필요한 형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우수주얼리의 또는 주얼리기업 명가를 사칭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칭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취소를 비롯하여 벌칙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액을 증액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교육 이수 및 갱신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분 과태료에 처하는 등[23] 제정안과 같이 처벌하는 유사 입법례를 찾기 힘들고, 행위에 비해 법정형이 과도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3)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등

아. 부칙

오세희·김동아의원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두 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기존 주얼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주얼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얼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경우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주얼리소매업의 등록 요건, 실태조사의 방법, 창업·제조·수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기존 주얼리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등록제 운영 시 해당 등록요건 및 소양 교육의 사전 이수 여부 등 절차를 고려하여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혼란이 크지 않도록 적정한 기간을 논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해외 사례 (산업연구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일본

□ 보석, 귀금속, 악세사리 등 판매영업에 필요한 **허가, 인가, 등록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법무국(국세청)에 **개·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를 받는 것으로 완료

2. 홍콩

□ **업계 자체적으로 주얼리 평판 상호**(Reputation Shop Mark) **인증제도** 시행

○ 홍콩 주얼리협회(Hong Kong Jewelers & Goldsmiths' Association)는 '17년 '주얼리 소매업 관련 법규'를 발표하고 주얼리 평판 상호 제도를 시행

○ 인증은 1년간 유효, 매년 인증 갱신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지침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해당 사실이 공개됨

3. 미국

□ **주얼리** 산업 분야에 대한 **특정 등록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체 자체의 등록 제도**가 있음

○ 관할 지역의 세금 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사용자 식별 번호, 판매허가증 등이 필요

4. 프랑스

□ **주얼리** 소매업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며**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등 절차**가 있음

5. 싱가포르

□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PSPM)에 의거하여 **귀금속 도소매, 중고품 거래 등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